

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2년 1월 4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 노후 되고 침체된 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,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1조 ~ 제3조)
-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-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체 지원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및 기능을 명시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경희)

가. 제출배경

- 농공단지에는 1960~70년대 급격한 산업화·도시화로 인한 도농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1984년부터 조성되었음
- 그러나 정책 시행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인프라가 낙후되고 정부 정책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
- 현재 충북 내 43개 농공단지 중 조성 후 20년이 경과 된 노후단지는 35개로 전체 농공단지의 81%를 차지하고 있으며(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현황조사, '21년 3분기 기준),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노후화, 판로 확보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
- 이에 따라 충북의 노후 되고 침체된 농공단지에 공공 인프라를 확충·정비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도모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
- 충북의 농공단지 현황을 살펴보면
 - 충북의 농공단지 수는 43개로 전국 농공단지의 9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입주업체 435개(5.5%), 고용인원은 14,553명(9.5%)으로 나타남
 -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농공단지 수와 고용에 있어 광역시를 제외하고 가장 적었으나 생산 및 수출의 비중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

(단위 : 개, 천㎡, 명, 백만원, 천달러, %)

구분	단지수	지정 면적	분양률	입주 업체	가동 업체	고용 인원	누계생산 (백만원)	누계수출 (천달러)
충북 (전국 비중)	43 (9%)	6,223 (8.1%)	97.1 -	435 (5.5%)	382 (5.4%)	14,553 (9.5%)	6,479,808 (14.3%)	1,357,994 (15.4%)
전국	476	77,239	95.9	7,862	7,094	153,777	45,314,956	8,810,467

나. 주요 검토내용

1)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

-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는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¹⁾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농공단지 개발 및 생산제품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농어촌정비법」과 농공단지 지정·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등을 주요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,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
-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구 분	조 례 명	제정일자
강 원 도	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	2018.11.09
충 청 남 도	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	2021.04.30
전 라 남 도	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	2021.11.04
전 라 북 도	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	2019.08.09
제주특별자치도	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2014.04.21

2)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**안 제4조**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 - 지원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,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 방향, 입주기업 지원 사업, 기반시설 및 정주환경 정비·확충 등 환경개선,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 및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
- **안 제6조**는 농공단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 - 농공단지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 확충,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·확충·정비사업, 입주기업 정보화체계 구축 사업, 입주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·컨설팅, 입주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홍보 사업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제2항제3호에서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

- **안 제7조**는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매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
 -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,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
 - 관련 법률 검토 결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생산한 물품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함
- **안 제8조부터 제9조**는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및 기능을 명시함
 -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충청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및 수행 가능한 기능을 명시하고
 - 사무국 설치·운영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였음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1984년부터 조성되어 온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이끈 큰 버팀목이자, 국가경제발전의 싹틔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
- 1990년대에 지정 권한이 기초지자체로 이전 되고, 생산과 고용 규모가 큰 국가 및 일반산단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면서 작고 영세한 농공단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, **활력회복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**
- 이에 본 조례는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, 입주기업 지원 및 생산제품 판로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**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**
-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